



## 2 미래 사업재편

### (1) 신산업 진출

#### 신산업 판단 기준
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'신성장·원천 기술'을 활용한 산업(제조업 또는 서비스업)
  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에 따른 '국가전략 기술'을 활용한 산업(제조업 또는 서비스업)
  - '규제샌드박스 4법'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산업
    - \* 규제샌드박스 4법 : 산업융합촉진법,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,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, 금융혁신지원 특별법
- ※ 신산업 해당여부는 미래사업판정위원회에서 판정

#### ※ '신산업 진출 기업' 예시

##### (예시1) 기존산업 → 신산업 진출



##### (예시2) 신산업 → 타 신산업 진출(신산업 범주 업종 전환·추가)



##### (예시3) 신산업 국내외 시장창출 및 확대(신산업 범주 동일업종 본격 진출)



※ 구분 :    시장이 없거나 시장형성 초기단계,    기존산업,    신산업

**참고 ①** 신산업의 범위(기활법 시행령 제3조의2)

**제3조의2(신산업의 범위)**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.

1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 혁신 성장산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
2.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
3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
4.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·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
5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7에 따른 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
6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

**참고 ②** 미래 사업재편의 판단(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조의2)

**제4조의2(신산업의 판단)** 제2조제5호 및 영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에 따른 미래 사업 재편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진출하려는 분야가 다음 제1호부터 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7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의 혁신성장자원,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
2.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제4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
3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2조제2호의 산업융합신제품 또는 제7호의 산업융합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
  - 가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
  - 나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
  - 다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



- 라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2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1조제3항제1호의 융합성 측정지수 평가를 통해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된 산업 융합 신제품·서비스
4.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·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
- 가.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
- 나.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
5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7에 따른 신성장·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에 속하고, 그 기술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하는지 여부
6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하는지 여부
7.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또는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하는지 여부
8.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산업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부
- 가. 시장구체성, 시장규모, 진입가능성 등 시장성
- 나. 산업파급도, 기술차별성 등 파급효과
- 다. 국제경쟁력, 신시장 창출도, 시장 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
- 라. 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



## 참고 ③ '신산업' 상세 범위

## 1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상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
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14개 산업, 53개 분야, 270개 기술을 신성장동력·원천 기술로 지정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|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미래형자동차(4)            | 가. 자율 주행차(2)                   | 나. 전기 구동차(2)                     |
| 2. 지능정보(25)             | 가. 인공지능(5)                     | 나. 사물인터넷(3)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. 클라우드(3)                     | 라. 빅데이터(3)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차세대SW(소프트웨어) 및 보안(9) | 마. 착용형스마트기기(5)                 | 바. IT 융합(3)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. 블록체인(1)                     | 아. 양자컴퓨터(1)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. 스마트물류(1)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콘텐츠(8)               | 가. 기반 SW(5)                    | 나. 융합보안(4)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(30)     | 가. 실감형 콘텐츠(4)                  | 나. 문화콘텐츠(4)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. 지능형 반도체·센서(11)              | 나. 반도체 등 소재·부품(10)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. OLED(7)                     | 라. 3D프린팅(1)                      |
| 6. 차세대 방송통신(8)          | 마. AR디바이스(1)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. 5G(5generation, 5세대)이동통신(5) | 나. UHD(Ultra-High Definition)(3) |
| 7. 바이오·헬스(23)           | 가. 바이오·화합물의약품(6)               | 나. 의료기기·헬스케어(7)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. 바이오 농수산·식품(7)               | 라. 바이오 화학(3)                     |
| 8. 에너지신산업·환경(29)        | 가. 에너지 저장 시스템(6)               | 나. 발전시스템(3)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. 원자력(11)                     | 라. 오염방지·자원순환(9)                  |
| 9. 융복합소재(25)            | 가. 고기능섬유(8)                    | 나. 초경량 금속(2)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. 하이퍼 플라스틱(1)                 | 라. 구리합금(2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마. 특수강(3)                      | 바. 기능성 탄성·접착소재(5)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. 희소·금속소재(4)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로봇(18)              | 가.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(6)              | 나. 안전로봇(2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. 의료 및 생활 로봇(6)               | 라. 로봇공통(4)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항공·우주(12)           | 가. 무인이동체(8)                    | 나. 우주(4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첨단소재·부품·장비(25)      | 가. 첨단소재(9)                     | 나. 첨단부품(8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. 첨단장비(8)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. 탄소중립(51)            | 가. 탄소포집·활용·저장(7)               | 나. 수소(5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. 신재생에너지(13)                  | 라. 산업공정(13)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마. 에너지효율·수송(13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4. 방위산업(2)             | 가. 방산장비(1)                     | 나. 전투지원(1)                       |

\* ( ) 해당기술의 개수 \* 위 표에 다른 신성장·원천기술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임.



## 2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상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

| 국가전략기술 분야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• 반도체(22)    | • 이차전지(9)     |
| • 백신(7)      | • 디스플레이(6)    |
| • 수소(9)      | • 미래형 이동수단(5) |
| • 바이오 의약품(8) |               |

## 3. 「산업융합촉진법」상 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 생산하는 산업

|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               | •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              |
| •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               | •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           |
| •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             | •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               |
| • 중앙집중식 산소발생시스템              | • 에너지마켓 플레이트                  |
| •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            | •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 주방              |
| •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      | • 스마트 AED 판매                  |
| •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           | • 태양광 연계 바나둠 레독스플로배터리 ESS     |
| • 개인 맞춤 화장품원료·화장품            | •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             |
| •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        | •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               |
| • 라떼아트 3D 프린터                | • 펩타이드 함유 Dermal Filler 의료기기  |
| • 융복합 냉온동시 히트펌프              | •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               |
| • AR·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| • 부동산 온·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    |
| •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           | • 커피찌꺼기 활용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 |
| •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4. 「정보통신융합법」상 정보통신 융합 기술·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

|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승인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행정·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   | •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     |
| • 스마트 전기자전거 충전콘센트          | •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         |
| • 통신사 무인기자극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    | •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|
| •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         | • 가상현실(VR) 모션 시뮬레이터        |
| •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       | •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    |
| • 모바일 운전 면허증 서비스           | • 공유주방 플랫폼                 |
| • 택시 앱미터기 서비스              | • TV 유희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     |
| • 가상현실(VR) 러닝머신 서비스        | •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             |
| •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| • 모바일 환전 서비스               |
| •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·버스       | •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   |



## 5. 「지역특구법」상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

| 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• 블록체인       | • 스마트 안전제어      |
| • 디지털 헬스케어   | • e-모빌리티        |
| • 자율 주행차     | •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|
| • 무인 저속 특장차  | • 바이오 메디컬       |
| • 수소 그린 모빌리티 | • 친환경 수소차       |
| • 에너지 신산업    | • 무인선박          |
| • 전기차 충전 서비스 |                 |

## 6. 「금융혁신법」상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산업

| 지역 규제샌드박스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은행의 알뜰폰 이용 금융·통신 결합서비스                  | • 부동산 시세 자동평가 서비스        |
| •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서비스                   | •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       |
| •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소비·지출 관리 연동 소액투자서비스    |
| •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| •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  |
| • 은행 지점 방문 없는 환전, 현금인출 서비스                | • 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          |
| •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| • 연금 자산 포트폴리오 자문 서비스     |
| • 비금융정보 활용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| •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방지 서비스    |
| • AI 로보어드바이저의 보험상품 상담·판매 서비스              | •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   |
| • 스마트폰 NFC 기능을 이용한 결제서비스                  | • 월급 중간정산 즉시자금 서비스       |
| • 모바일 앱을 통한 계모임 플랫폼 제공 서비스                | • 얼굴만으로 간편 결제 할 수 있는 서비스 |
| •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• 해외 여행자보험 스위치(on-off) 가입·해지 서비스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•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플랫폼 이용 시 결제정산대행 서비스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•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다이렉트 보험 e-쿠폰 제공 서비스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•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•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제공 서비스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•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조건을 비교·확인하는 서비스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•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•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P2P금융서비스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• 금융투자상품권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·선물하는 서비스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• 포인트(선불 전자자금수단) 연계 체크카드 발급·결제 서비스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